

“이런 농약 팔지도 사지도 맙시다”

농약구입시 제조모집단번호, 약효보증기간 확인토록
불량농약은 제조회사에 연락, 반품해야

농업과학기술원 농약품질과

농약의 품질관리

농약의 품질관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농약의 원·부재 구입에서부터 제조와 유통과정을 거쳐 농민들이 사용하는 과정까지의 종합적 품질관리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지금부터 얘기하려하는, 시중유통과정에서의 사후적 품질관리입니다. 다시말하면 유통농약의 품질검사와 시중유통단속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통농약의 품질검사는 국내의 농약 제조업체가 출하전에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시중에 출하한 농약에 대해 연간 6백여점을 발취하여 품질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이때 불합격된 품목은 수거 조치하여 품질 불량농약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농민들이 농약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약 단속공무원이 판매상에서 농약을 발취하는 것은 이와같이 품질검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중 유통단속은 시중 농약판매상이나 무등록 판매업소를 단속하여 무고시, 밀수입 또는 유

사농약 등 소위 부정농약을 적발하여 판매 금지시키고 있으며,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이나 포장지가 훼손되어 무슨 농약인지 알수 없는 농약 등 불량농약도 적발하여 유통을 예방함으로써, 국내 농약 시장에 부정·불량농약의 유통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약의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농업과학기술원이며, 그 중에서 농약품질과가 품질검사와 시중유통단속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중유통단속을 실시하면서 문제된 부정·불량농약의 유통근절을 위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부정·불량농약이란?

●부정농약

우리나라의 현행 농약관리법에서는 「농약이라함은 농작물(수목 및 농림산물을 포함한다)을 해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적 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데 사용

되는 성장조정제 및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작물을 해하는 병해충과 잡초방제 그리고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모든 약제를 넓은 의미의 농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농약”이라는 법적인 정의가 명확한데도, 요즈음 시중에 나돌고 있는 소위 부정농약으로 분류되는 미고시 유사농약들을 보면, 한결같이 포장지에 “농약”이 아니라고 써 놓았지만 실제로는 앞에서 말한 농약의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다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공해 농약”이나 “화학제품”이 아닌 천연으로 제조하여 병충해 방제와 증수에 효과가 좋다는 식의 허위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농약을 판매하는 판매상이나 사용하는 농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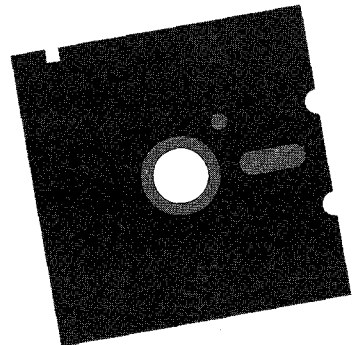


표1. 부정농약의 유형

| 유형별 | 주요 내용 | 예 |
|-------|--|--|
| 무고시농약 | 국내에서 약효, 약해시험을 거치지 않고 농약품목으로 고시되지 않은 것을 정상적인 농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 | 프로피오신, 목초액, 에스텔, Acetop-A, Actus, 늘푸른, 빛모음 등 |
| 무등록농약 | 국내에 농약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제조업이나 품목등록을 하지 않고 밀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나메도리(달팽이킬라) →국내고시약제는 나메톡스임 |
| 밀수입농약 | 외국농약을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 메네돌, 벤레이트*, 지만다이센, Berry-set, 리후레쉬, 스토포르투 |
| 위조농약 | 외관상 정상품과 같아 보이지만 규격, 유효기간 또는 적용대상 병해충을 허위로 변조하거나 내용물을 엉터리로 넣고 포장만 정상품 같아하여 판매하는 경우 | 디디비피유제(25%) →정상품은 50%임 비나인수화제(위조품) |
| 유사농약 | 농약인지 비료인지 애매모호한 내용과 과대선전으로 판매하는 경우 | 키토메치 |

*벤레이트의 국내고시품목은 50%수확제임.

은 절대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전문적인 시험·연구기관에서 2년에 걸친 약효, 약해, 독성, 잔류성(작물·토양·수질오염)시험 등 국내 적응시험을 실시하여 약효가 인정되고 약해가 없으며 잔류기간이 짧고 독성 검증을 받은 후, 농림수산부의 전문심의 의결기구인 농약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약으로서 품목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 농약 제조업체에서는 고시된

품목에 한해 등록을 한후 제조·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국내 적응시험을 거친 후 농약 제조회사가 제조한 정상적인 농약을 구입하여 사용했을 때는 약효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약 약효가 없거나 약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체로부터 적절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검증을 거치지 않고 제조업자도 확실하지 않은 무고시 유사농약을 구입사용하여 약효도 없고 약해가 나서 농사를 망쳤다면 누구에게도 보상받

을 길이 없습니다. 신도불이라는 말도 있지만 농약 역시 국내 농약의 품질이 외국 농약보다 우수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작물도 토질과 기후에 따라 똑같은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토질, 우리의 기후에 맞게 시험한 우리나라 농약이 효과가 더 클수 밖에 없습니다.

부정농약이 선전하는대로 좋은 농약이라면, 국내 적응시험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제품으로 판매하지 왜 당국의 눈을 피해가며 점조직과 같은 판매망을 통해 판매를 하겠습니까? 이점을 판매상이나 우리 농민들이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약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사용자인 농민들은 국내 농약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정상적인 제품 외에는 아예 구입도, 사용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농약을 팔아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판매상이 전적으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부정농약들은 표1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 이런 농약은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맙시다.

특히, 이와같은 부정농약은 제조자를 추적 조사하여 발본색원하고 있으나, 판매망이 거의 점조직

형태여서 이런 농약을 구입한 판매상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아 단속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농약을 구입하거나 사용했을 때는 금전적인 손해와 인력낭비, 약해 발생 등 피해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런 농약은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맙시다.

● 불량농약

불량농약이란, 농약제조업체가 제조과정에서 잘못 만들었거나, 정상적인 농약이 시간이 경과하거나 운송과정 또는 보관중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겨나는 불량농약입니다. 이런 농약들 역시 사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불량농약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다.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농약은 화학제품으로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약효를 나타내는 주성분이 분해되어 줄어들므로 약효도 그만큼 떨어집니다. 농약마다 포

장지에 약효보증기간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구입할 때 확인하여 보증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약의 연도제를 실시하고 있어, 매년 10월말일자로 해당 농약의 약효보증기간이 만료되므로, 농약판매상에서는 10월말일이 지나면,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것은 수거하여 제조회사로 반품하여 새로운 농약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포장지 훼손농약

농약 포장지가 찢어진 것과 약액이 흘러 넘치거나 오물이 묻어 포장지가 훼손되어 무슨 농약인지 또는 약효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농약은 판매할 수도 없고 사지도 말아야 합니다.

검사필증 미부착 농약

농약 제조업체가 농약을 제조한 후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주성분이 이상이 없으면 반드시 검사필증을 병뚜껑 부위에 부착하여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필증이 붙어있지 않은 농약은 위조농약일 수도 있으므로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농약 판매상이 지켜야 할 사항

● 판매금지 농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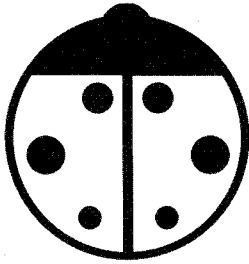
부정농약

정상적인 농약은 국내에서 시험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약으로 품목을 고시하면 제조업체가 품목등록을 한 후 그 품목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된 제조업체(12개사)에서 제조한 농약이 아니면 모두 부정농약입니다. 또한 포장지 표기내용이 일반농약과 다른것, 예를 들면 모집단번호는 제조년월과 일련번호(95년 4월에 제조한 다섯번째 모집단은 9504-05)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엉뚱한 번호를 썼다든지, 안전사용기준이나 주의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것은 모두 부정농약입니다. 또 외국어로 표기되었거나 외국상표, 외국 제조업체가 표기된 것은 부정농약이며, 농약이 아니라고 써 놓고서 사용방법이나 적용대상에는 병해예방이니 충해방지니 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도 부정농약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사용되다가 위해성 문제로 품목이 폐지된 농약도 모두 부정농약으로서 이와 같

표2. '95 부정·불량농약 단속실적 ('95년 7월 현재)

| 적 발 사 항 | | 적 발 건 수 |
|---------|-----------------------------------|---------|
| 부정농약 | · 무고시, 무등록 농약 판매 · 밀수입 유사농약 판매 | 10 |
| 불량농약 | ·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판매 · 포장지 훼손농약 판매 | 52 |
| 법규위반 | ·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 시설 미비 등 | 14 |
| 계 | | 76 |



은 농약을 팔아서는 안됩니다.

불량농약

불량농약이란 앞에서 설명했듯이 농업과학기술원에서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품목이나,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 또는 포장지가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농약으로서 이것 역시 팔아서는 안되는 농약입니다. 이러한 농약은 해당 제조회사에 연락하여 모두 반품을 하여야 합니다.

●법규위반 행위

농약판매상이 알고 지켜야할 사항중에는 부정·불량농약 판매금지 뿐만 아니라 행정법규도 지켜야 합니다.

그 첫째는, 모든 농약의 구입과 판매내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이 제출을 요구할 때는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는, 취급제한기준(농약관리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을 지켜야 합니다. 고독성농약은 다른 농약과 구분하여 시건장치가 된 별도의 진열장에 보관하고, 판매시는 장부에 구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셋째, 농약관매업 등록시 확보한 시설중 참고시설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만약 참고가 없으면 등록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조속히 보관을 해야 하며,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량농약의 처리

불량농약, 즉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과 포장지 훼손농약 그리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농약은 언제라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해당 제조회사에 연락을 하면 반품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10월이 되면 약효보증기간 도래품목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증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해당 제조회사에 반품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농업과학기술원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농약은 시·군과 농약제조회사가 모두 수거에 힘쓰고 있으니 해당 제조회사나 시·군에 연락하여 수거해가도록 해야 합니다.

●알아야 할 처벌규정

위에서 말씀드린 농약관매상이 지켜야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이 농약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벌에도 행정조치와 형사벌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행정조치로서 1회에 경고가 주어지고, 형사벌로는 고발 조치되어 3년이하의 징역이

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현행 농약관리법 제25조에서 제28조까지가 모두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들이며, 잘 숙지하여 법을 지켜가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등록권자의 조치사항

현행 농약관리법에서는 농약관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의 위임에 의해 시장, 군수가 행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판매상의 등록권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등록권자는 시중 판매상에 대한 지도·감독과 행정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내의 판매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알고 조치해야 할 사항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부정·불량농약의 처리

부정농약의 처리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8 불량농약의 처리요령에 의해 시군 단속공무원이 시중 농약관매상에서 부정농약을 적발하거나, 중앙단속반의 적발사항을 인계받았을 경우에는, 동 농약을 봉인조치하고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폐기 등 처리요령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불량농약의 처리

불량농약도 부정농약과 마찬가지로, 일단 봉인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후, 농림수산부 장관 지시(방역 27135-55: '91.1.18)에 의해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서 해당 제조회사에서 수거해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과학기술원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된 품목에 대한 조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약제조회사에서 제출한 당초 출하지역과 실제 그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상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농약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로서, 처음 제조회사에서 농약을 구입한 도매상이 다시 타 지역의 도매상이나 소매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제조회사에 입력된 당초 출하지역의 판매상에만 수거 공문을 보내서는 완전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약 불합격 농약에 대한 수거공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판매 전 농약판매상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재고량을 파악, 수거를 해야만 완벽한 수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의 농민들은 불합격 품목을 모르고 사서 쓸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약효가 없다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해 시·군 단속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됩니다.

●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부정·불량농약을 판매하거나 농약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정벌과 함께 형사벌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군에서는 행정처분만 하고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예도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농약판매상에 대하여 행정조치로서 경고만 발하고, 농약관리법 제25조(벌칙)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속공무원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행정처분 기준이 농림수산부 훈령에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구법에는 “등록취소 및 고발”이라는 행정조치가 있었다가 개정시 삭제되어 고발은 필요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고발”이라는 조항은 법에 의해 당연히 고발을 하여야 하므로 행정조치에는 삭제시켜야 옳다는 법리해석에 따라 삭제한 것이 고발조치를 하지 말라는 것

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후, 범규위반 사항 적발시에는 농약관리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벌칙조항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농약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중앙단속반의 부정·불량농약 단속업무 집행에 대해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농약관리법 제26조에 의해 처벌이 무거우므로 이 점도 주지시켜서 판매 판매상이 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농업과학기술원 농약품질과는 부정농약 단속을 위해 인력의 최대 활용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방문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농산물 주산단지외의 독농가, 농민후계자분들과 농약품질에 대한 토론도 하여 여론 수렴을 하고 약효가 불량하거나 약해 또는 인축에 위해를 주는 농약은 도태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의 농약판매상과 농협단위조합에서는 지역농민을 위해서 품질 좋은 농약을 공급하고 안전 사용방법을 잘 지도해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의 단속검사 업무에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던 감사하겠습니다. **농약정보**

